

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新 외환법 제정 필요성 및 기본방향

新 외환법 세미나 토론회 발제자료  
2022년 7월 5일 화요일

# 목차



**1** 외국환거래법 연혁 및 현황

---

**2** 新 외환법 제정 필요성

---

**3** 주요과제 세부내용(안)

---

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외국환거래법 연혁 및 현황



# 시대변화에 따라 외환제도도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.

## 대외거래 자유화

- 외국환관리법(61년 제정) 폐지  
→ 외국환거래법 제정(99년)

관리법	거래법
합리적 조정·관리 외화자금 효율적 운용	대외거래 자유 보장 시장기능 활성화

- '99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 실시

기업· 금융기관 (1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경상거래) 현지 R&amp;D 활동비 지급, 업무용 부동산취득 허용 등</li> <li>· (자본거래) 선물환거래 실수요원칙 폐지, 기업 단기외화차입 허용 등</li> </ul>
개인 (2단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경상거래) 해외여행경비·이주비 지급한도, 은행 매입한도 폐지 등</li> <li>· (자본거래) 해외예금 제한 폐지, 해외증권 취득대상 및 절차 완화</li> </ul>

##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

-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 
→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조치

- ①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 축소
- ② 불요불급한 외화수요 제한
- ③ 은행 외환건전성 관리 강화

선물환포지션 도입

외화대출 용도 제한

외화유동성 비율 모니터링 강화

중장기 자원조달비율 상향 조정

조기경보체계(EWS) 보완

## 금융산업 발전 지원

- 은행만 외국환업무를 취급  
→ **非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**

- 개별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소관업무 관련 모든 외환거래 가능  
(예: 증권사의 증권 관련 금전 용자, 자기자본 50% 한도)
- 국내 금융기관 선진화, 글로벌 진출 확대 등을 위한 일부업무 추가 허용  
(예: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IB 기업 일반환전 허용)

- **非금융기관도 송금·결제 등 일부 외국환업무취급 허용**

소액해외  
송금업자

기타  
전문외국환  
취급업자

# 하지만, 여전히 외환거래는 참 어렵습니다.

##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

- 출국 前 은행에 월세 보증금 등 정착비용으로 해외송금(7만불) 요청
- 은행은 5만불 이상 & 사용목적 확인 不可 이유로 곤란 답변
- 1만불만 휴대(신고예외)하여 출국
- 6만불 송금을 위해 어머니가 대신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(한은) 실시



**1~2개월 이상 기간 소요**  
**최소 11개 이상의 서류 제출 필요**

매매신고서, 사유서, 인감증명서, 출입국사실증명, 재직증명서, 납세증명서, 예금잔액증명서, 재원 증빙서류, 위임장(영사관발행 또는 현지 공증), 서약서 등

## 해외직접투자 진행중인 B 기업

- B 기업은 C 은행을 통해 해투 신고 후 송금 → 태국소재 기업 지분 50% 취득
- 추가로 4만불 상당 기계를 현물출자 하였으나, 해투 사전신고 누락\*
- \*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라 아니라면, 증액투자시 사전신고 필요
-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(100만원\*) 납부
- \* 위반금액(4만불) 2%에 해당, 위반금액 10억원 초과시 형벌부과 대상
- 별개로 매년 사후보고서 제출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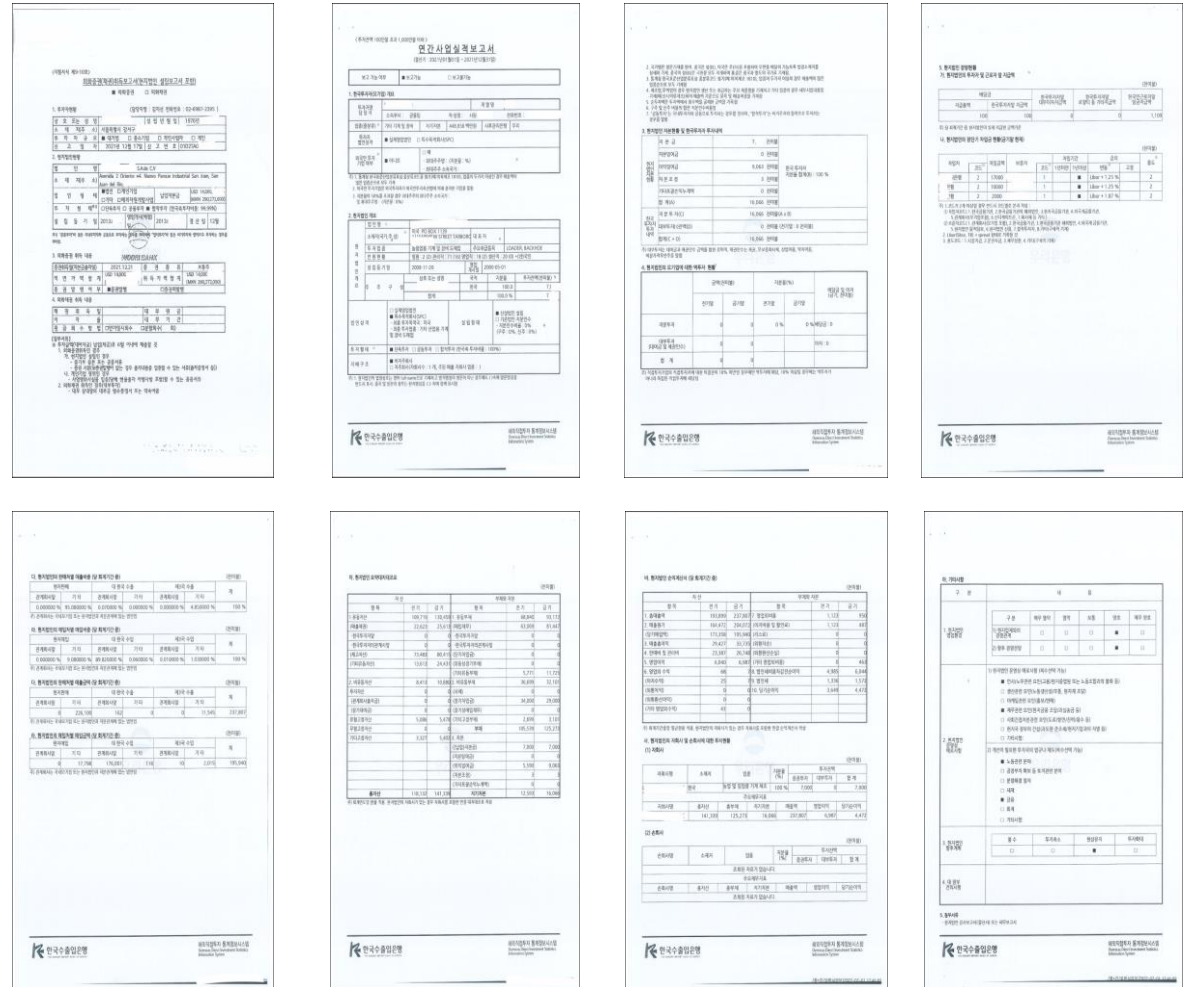
**법규위반 우려, 사후보고 부담으로 기업 해외투자가 사전적으로 위축**

기관·대상에 따라 해당기관에 사전신고, 추후 내용변경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보고 실시, 투자 후에도 매년 사후관리보고서 작성 및 청산즉시 국내 회수

#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서 예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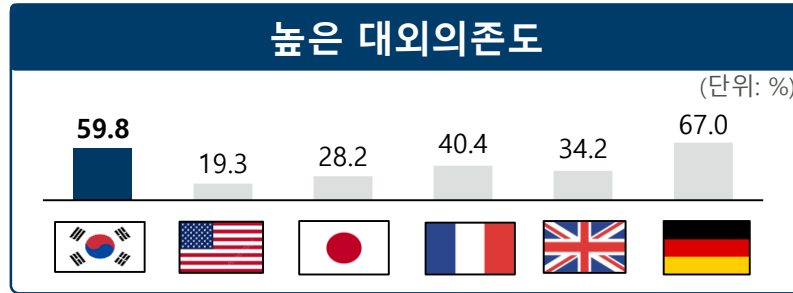
## ■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주요 기재사항

- 한국투자자(모기업) 개요
  - 투자자명, 담당자(소속부서, 직위/성명, 전화번호), 업종, 자기자본, 사후관리은행, 투자자법인 성격, 외국인 투자기업 여부
- 현지법인 개요
  - 법인명, 소재지, 대표자, 투자업종, 주요 취급품목, 인원현황, 설립 등기일, 주주구성, 영업 개시일, 법인성격, 설립형태, 지배구조 등
- 현지법인 자본현황 및 한국투자자 투자내역
  - 현지법인 자본현황(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 등) 한국투자자의 지분투자 내역, 대부투자 잔액 등
- 현지법인의 경영현황
  - 모기업의 지분투자 및 대부 금액, 투자자 및 근로자 앞 지급액, 장단기 차입금 현황, 판매처/매입처별별 매출비중/금액 등
- 기타 서류 및 조사사항
  - 현지법인 영업환경, 운영상 애로사항, 향후계획 및 정부 건의사항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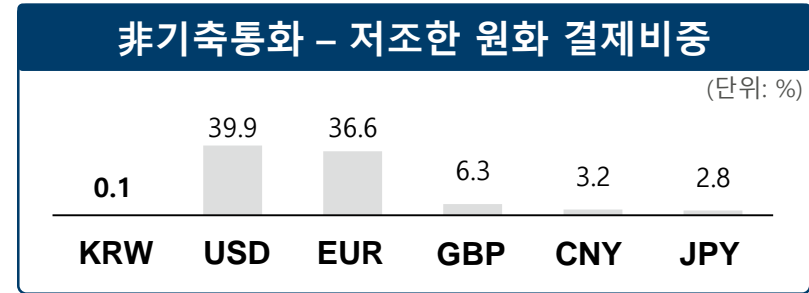


# 어려운 외환거래제도, 그럴만한 이유는 있습니다.

**Original Sin**  
(신흥국 원죄)



출처: OECD(2020년, 일부국가 2019년 기준) / (수입액+수출액) / GDP



출처: SWIFT, '22.1월 기준

**IMF**  
**외환위기**  
**트라우마**

### 대외신인도 붕괴 경험

국가신용등급	원/달러 환율	외환보유액
<b>Ba1</b> (투기등급까지 하락)	<b>1,962</b> ('97.12.23일 증가)	<b>204</b> ('97년말, 억불)
<b>Aa2</b> (8단계 상승)	<b>1,292</b> ('22.6.20일 증가)	<b>4,631</b> ('21년말, 억불)

출처: Moody's, 한국은행

### 외환자유화 과정에서도 보완장치 병행

사전 모니터링	위기시 세이프가드
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운영	가변예치 의무, 자본거래 허가제
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심주의	외환집중, 대외결제 제한
외국인투자 등록 + 투자전용 계정	대외채권회수의무 ('17년 세이프가드 전환)

**대외건전성**  
**유지 外**  
**역할 수행**

### 他국가기관의 他법상 의무수행과 유기적 연관

기관	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
금융위	자금세탁 방지(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률 등)
국세청	재산해외도피, 역외탈세 방지(조세범처벌법 등)
관세청	재산해외도피, 자금세탁 방지(특정경제범죄법 등)
한은	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작성(한국은행법)

### 국회 · 언론은 추가 역할 기대

“종교단체 해외선교자금 신고 예외 규정 신중역외탈세 수단 될 수 있어... 국부유출 구멍 열어놓고 관련기관 아무도 몰라”

'19년도 국정감사 대한민국의회

“해외도박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었다.”는 000(연예인)의 말은 '잘못회피' 라는 지적을 받았다.

'22.5.19일 언론 기사

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新 외환법 제정 필요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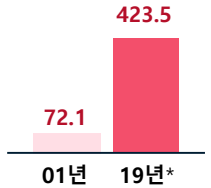


# 서둘러서도 안되지만,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.

## 외환거래 증가 및 고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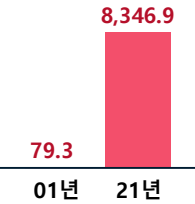
- 해외 송금, 증권투자 등 보편화  
→ 일반국민의 거래수요 급증

해외유학·여행·개인 이전소득 지급액(억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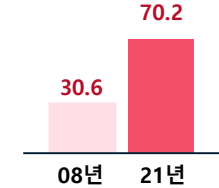


\* 20년~21년 코로나 상황 고려

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규모(조원)



외국환은행 對국내고객 현물환 거래실적(억불)



출처: 한국은행

- 새로운 결제방식·지불수단 등장  
→ 단편적 대응은 한계에 봉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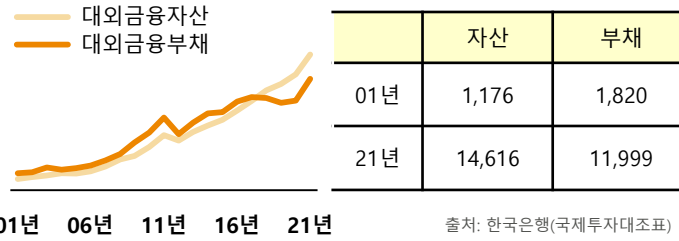


- 신고·예외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율
- 未열거 거래 등장시 규제공백 발생
- 법령·규정에 새로운 규율 추가마련

## 국내 산업·자산 매력 저하

- 국내자산(비거주자) 대비 해외자산(거주자)의 선호가 확대되는 경향

대외금융자산·부채 추이(억불)



출처: 한국은행(국제투자대조표)

- 불편한 거래절차는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접근성 저해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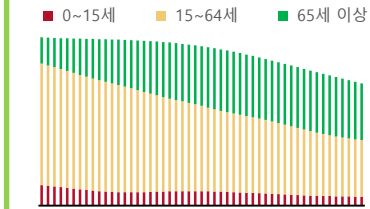
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환거래절차 비교

	韓	日	中	홍콩	싱가폴	대만
자본거래 신고의무 부과	○	△	○	X	X	○
비거주자·외국인 별도규제	○	X	○	X	X	X
지급·수령, 금액한도 규제	○	X	○	X	○	○

## 新소득창출 수단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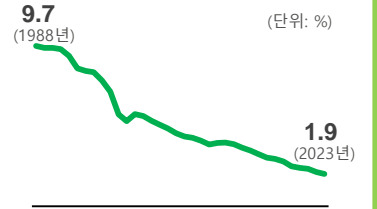
- 우리 경제는 인구 고령화,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

연령계층별 추계인구



출처: 통계청(장래인구추계)

한국 잠재성장률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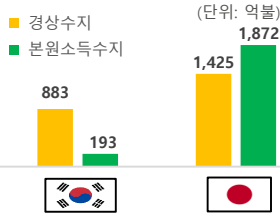


(단위: %)

출처: OECD

- 해외투자를 통한 수익률 제고, 가처분소득 증가 지원 필요

한·일 경상수지 구조 비교



출처: IMF

- 해외투자시 외환거래절차 완화
- ↓
- 해외직접투자, 해외증권투자 확대
- ↓
- 이자, 배당수익 등 본원소득 증가

# 단편적인 개편으로는 어렵습니다. “폐지 후 제정” 해야합니다.

새로운  
규제철폐  
도입

외환부족시절부터의 금지적 철폐



現 시점에 맞는 자율적 규율 도입

모든  
개편이슈  
반영

복잡한 법체계下 부분개편만 지속



모든 이슈를 한 번에 반영

관성적  
규제존치  
탈피

개편時마다 기존규제 당위성 부각



모든 규제의 필요성 원점검토

# 외환거래가 획기적으로 편해지고,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.

## ① 외환거래편의 대폭 확대 및 새로운 거래유형 대응성 강화

- **(거래편의)** 대외건전성과 무관한 일반 외환거래 사전규제 대폭 완화 + 동일실질거래-동일규제 원칙 도입
- **(대응성 강화)** 새로운 결제방식, 지불수단 등 사전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방안 마련

## ②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단계적 원화국제화 기반 마련

- **(금융발전)** 원화 관련 금융상품 발굴, 사업기회 확대 등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검토
- **(원화국제화)** 거주성 판단기준 재점검 → 외국인·비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급·수령 규제 완화 검토

## ③ 무역 중심의 해외소득창출 구조 다변화 지원

- **(해외직접투자)** 신고·보고 대상 및 절차 간소화 + 국경간 자금이동이 없는 경우 등 사후보고 의무 완화
- **(포트폴리오투자)**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신고대상 및 변경 신고·보고 대상 완화 등 필요성 검토

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# 주요과제 세부내용(안)



# 주요과제 1 : 자본거래 및 지급·수령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

## 현재: 사전신고 원칙 + 신고예외 열거

- 경상거래는 자유화되었으나, **자본거래\*** 및 **비정형적 지급·수령시에는 사전신고가 원칙**
- \* 신고누락시 과태료(1억원 이하) 또는 형벌(징역 1년, 벌금 1억원 이하) 부과
- 거래유형별(규모 · 상대방 · 국경간 자금이동 여부 등) **신고필요 여부 및 주체·접수기관이 모두 상이**

### <예시: 거주자/비거주자의 원화/외화자금 차입>

- **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**
  - 미화 3천불 이하 :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
  - 미화 3천불 초과 :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
- **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차입**
  - 10억원 초과 : 기획재정부 장관 신고
  - 그 외 자금차입 :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 신고
- **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**
  - 해외직접투자자가 1년 미만 대여 :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신고
  - 그 외 자금차입 : 한국은행총재 신고 원칙

## 개선: 未신고 원칙 + 신고대상 열거

- **자본거래 및 지급·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폐지**  
→ 외국환은행 확인\* 및 외전망 보고만 실시
- \* 거래당사자는 외환거래의 유형, 상대방, 규모 등을 기재
- 단, 사전인지 못할 경우 **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 유지**

### <자본거래 및 지급·수령 규율 개선방안 예시>

- (추진방향) 자본거래 및 지급·수령 유형을 전수조사하고, 각 유형을 사전신고·사후보고·신고예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·원칙 마련
    - ① (필요성) 대규모 외환유출입 등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래인지
    - ② (시급성) 외환당국의 사전인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거래인지
    - ③ (지속성) 사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는지
  - (분류방안) 원칙·기준 해당여부에 따라 모니터링 범위 결정
    - ①에도 해당 안 되는 경우 → 신고예외
    - ①만 해당 → 사후보고(1회) 사항으로 규율
    - ①+②만 해당 → 사전신고 사항으로 규율(단, 최대한 예외적인 경우만 규율)
    - ①+②+③ 해당 → 사전신고 및 주기적 사후보고 사항으로 규율
- 관세청·한은·금감원 등 관계기관 논의 및 연구용역 결과 반영, 보완 예정

# 주요과제 2 :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

## 현재: 업권구분에 따라 업무범위 결정

- 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

<예시: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매매업자>

자본시장법	외국환거래법
금융투자상품의 매매 (법 §6조2항)	자본시장법 상 해당 금융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(규정 §2-14조1항)
증권의 대여 (법 §72조1항, 영 §69조1항)	자기자본 1조원 이상 회사의 외화증권 대차 (규정 §7-45조1항)

- 해외송금·환전 등 외환법상으로만 규율가능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 규율도 존재

<예시: 「자본시장법」상 투자매매업자>

외국환거래규정 제2-14조(투자매매업자 등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는 영 제14조제4호라목의 업무(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·추심 및 수령 → 해외송금 및 해당거래와 관련한 환전을 의미)를 건당 각각 미화 5천불의 지급 및 수령 한도, 동일인당 각각 미화 5만불의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한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.

## 개선: 동일 업무 - 동일 규제 도입

- 해외송금·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필요한 일관된 기준 정립(예: 모니터링 역량 확보)
  - 기준 충족시,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발전 차원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업무범위 확대 검토
- 모법 범위 내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지속 허용하되, 대외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규율\* 부과
- 모니터링 실효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간 규제차별 문제 해소

\* 외환법(대외건전성 유지)과 금융법(금융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) 목적 차이 감안

<예시: 해외유학생 생활비 6만불 송금>

외국환은행	투자매매업자	소액해외송금업자
지정거래은행 + 매년 입증서류 확인 → 송금 가능	연간 5만불 금액한도 초과 → 송금 불가능	서류 제출 없이 다수 업자를 통해 송금 가능

# 주요과제 3 : 법령체계 전면 개편

## 현재: 복잡한 조문구조 + 포괄적 위임

### ■ 금지적 입법철학 下 형성된 '원칙(금지)-예외-예외의 예외' 체계로 조문체계가 복잡

<사례: '예외의 예외' 예시>

- 외국환거래법 §18조(자본거래의 신고 등) ①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(≡ 원칙)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(≡ 예외).
-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§32조(자본거래의 신고 등)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"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.
  -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(≡ 예외). 다만,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(≡ 예외의 예외) 하도록 할 수 있다.
- 외국환거래법 규정 §2-12조(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)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(증권발행을 포함한다)하거나(≡ 예외의 예외)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■ 포괄적 하위규정 위임(법·영→외국환거래규정)에 따른 위임입법 한계범위 설정 문제 발생\*

- \* 외국환거래법 §25조(사무처리 등) ④ 기재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나 지급·수령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  
→ 동 조항을 근거로 법령의 포괄적 위임을 받아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실질적인 절차규제 규율

## 개선: 구조 단순화 + 위임체계 개선

### ■ 법령 서술체계를 '원칙-예외'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여 국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

- \* 현행: 법<사전신고 원칙> - 영<신고예외 열거> - 규정<예외의 예외>  
→ 개선: 법<신고예외 원칙> - 영<신고대상 열거> - 규정<기술적 사항>

### ■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있는 조항들은 시행령·규정(장관 고시)에서 법률로 상향입법

- 의무위반시 제재 강도를 기준으로 형벌 관련 사항은 법률, 행정벌 관련은 영·규정에 규율

### ■ 은행법·자본시장법·보험업법 등 他금융법 입법례\*를 감안하여 '규정 중심체계'는 유지

- \* 은행업감독규정, 금융투자업규정, 보험업감독규정에 세부절차 규율



Ministry of Economy  
and Finance

감사합니다

